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2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 건수를 심사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8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9건, 총 7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심사할 부처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관 35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6건으로 총 51건 심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심사 진행 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심사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3분)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번, 먼저 가운데 표를 보시면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까지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통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부터는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를 보시면 사업을 세분화해서 분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분할 공모 방식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디지털금융, 데이터 등 분야 전문가가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서에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행 사업구조를 보시면 용역비 총액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용역사업자가 법률검토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행 구조는 용역사업자가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핀테크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업은 강좌 개설 1회당 평균 수료 인원은 2.4명, 총수료 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두 번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다 동의했는데요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미 정부 측이 다 서면상으로 동의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제목만 불러 주시고 이의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면 사업 내용하고요 시정요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서 동의하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드리고.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1번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등은 정부가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자금세탁방지추진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 내에 편성된 국외여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안은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제출장 등 국제공조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입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9% 금리의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위변제율이 예상보다 급증한 결과 실제 보증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보증공급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 총 대위변제액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고 서민금융 공급 조절 차원에서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2023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증공급이 축소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최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상품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7페이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연간 집행액이 2840억에 그친 결과 2024년도 진흥원 내 유보잔액이

3200억 규모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분인출분에 대하여 정부기여금의 일부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긴 만기와 과도한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가입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중도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부분인출서비스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관련된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이라면 부당한 사실이라는 게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시정요구 첫 번째, 1-1은 주의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의 상품 구조를 바꾸라는 2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하니까 부당하다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앞의 부분은 주의, 그 뒤의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1페이지입니다.

햇살론15 사업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5.9% 금리의 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잔액이 고갈됨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정부재정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방식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는데 햇살론15 사업의 대위변제율이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6년 10월부로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실효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보증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입니다.

현행 서민금융법상 금융회사 출연 근거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햇살론15 사업의 수요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예측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 의견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의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의 50%인 6억 2800만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45.5%에 불과합니다.

다음, 최근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리인 지원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비율은 1.1%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14페이지,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 6억 원 이상 예산을 불용시킨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추심 발생 여부를 표준 양식으로 의무 집계하고 이를 결산상 성과지표로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부분은 특히 김현정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저희가 좀 소홀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정책실패라는 부분은 정부 신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이 워딩만 조금 다듬어 주시면 저희가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를.....

○김남근 위원 주의는 유지를 하고 내용에서 '불용시킨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도 해 주시면.....

○김현정 위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표현을 좀 빼 달라는 의미니까 그 문구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柳榮夏 위원 문구를 어떻게 정리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저희한테 숙제를.....

○소위원장 이정문 '차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현정 위원 '차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할 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문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5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펀드 사업은 신산업·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 유인 부족, 투자 대상 중복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안은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의 운용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통합·폐지하고 그 외의 기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국민성장펀드 체계를 고려하여 재편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도 정부 동의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역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개발프로젝트 민간자금 모집현황 및 사업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지역개발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을 높이고 향후 지역개발프로젝트 선정 시 타 지역개발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의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2개 중에 어떤 걸……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2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현정 위원님, 어떻게……

○김현정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잠깐, 하기 전에 지금 보훈부와 공정위가 각각 7명이 추가로 올라오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짓지요, 깔끔하게」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오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 양해해 주셨으니까 오늘 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시작 후 33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기준 총 10.4조 원의 매입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계좌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이 34.2%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향후 중장기 매입 수요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총채권매입 목표를 재검토하고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새출발기금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 및 대부업계의 협약 가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정문 위원님은 1번을 주의로 주셨고요 김남근·김현정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1페이지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확보 및 투자대상 선정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펀드의 투자 집행현황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정책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하셨는데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을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 운영 규모 및 방식을 재검토하여 향후 금융위원회 청년인턴을 타 기관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인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예산에 반영하며 적절한 청년인턴 규모 산정과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과가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명을 수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김용만 위원님은 시정, 강준현·김남근 위원님은 부대의견인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소위원장 이정문** 유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처음에 50명 인턴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20명하고 나머지 예보랑 금감원에 30명을 보냈는데 그러면 처음에 수요 예측할 때 50명으로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처음에 저희가 예산안을 낼 때는 9명을 제출했는데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50명으로 늘려 가지고 저희 26개 과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깎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것 주시면 청년들……

○**柳榮夏 위원** 아니, 어차피 자기들이 해 봐야 지금 20명밖에 소화가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30명으로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어떻든 예산은 깎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청년을 위해서는 좀……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용만 위원님, 동의하시는가요?

○**김용만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 의견을 철회하신다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예,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으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3페이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공무원 상용임금, 특근매식비·복리후생비·기타운영비 등의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개인별 계좌 지급 원칙과 달리 부서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개인별 계좌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향후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 시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이 부분 동의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4페이지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예수원금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49조 원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등 다른 재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적자금 부채상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다음 세대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2024년 말 기준 17.3배에 달하고 있어 정부 출연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 운용배수는 여전히 16.7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배수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6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기금 자체 변경, 법정 상한에 근접한 자체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대위변제금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연례적인 대규모 자체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 보증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7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은 농림어업인의 금융지원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유동성 관리를 목표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3.88%로 사업체계가 유사한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의 수익률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여유자금의 관행적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 운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자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조직의 분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입니다.

동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기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정부출자수입은 출자회사 주식, 보증연계투자 주식,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주식 배당금 및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금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출자수입 과목 편성 시 매년 출자회사 및 보증연계투자 주식 배당금만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의 대부분은 계획안에 반영되어 편성되지 않은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SPC 출자금과 대물주식 배당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자수입 산정 시 유동화회사보증 관련한 SPC 출자금 및 대물주식 배당금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0페이지입니다.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기업별 예상 부실률이 실제 부실률에 비해 과다하게 추계되어 동 계정에서 대위변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실률을 현실화하여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한 분은 주의고 한 분은 제도개선인데요, 합쳐 그냥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가 주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이유는 들어 봅시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의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대위변제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발행된 것들의 만기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도 실제 모형을 정교하게 하는 노력 외에 어떤 확실한 제도개선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높여서 주의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고육지책을 생각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제도개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암만 봐도 이것은……

○이인영 위원 그 얘기는 주의해도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대위변제율이 원래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형을 만들고 분석할 때 좀 더 선량한 관리자로서 더 많은 정보와 현장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 잘 받드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1페이지입니다.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해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20.1%입니다.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서울시 경관심의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본점 주차타워 공사의 경우 BF 인증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준공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및 인증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2페이지입니다.

경영지도 사업은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료 수입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비용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료 납부 금액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이 일반보증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순자산이 잠식된 상태고 현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24년 일반보증으로부터 임시 전용한 2000억 원에 대한 상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효과성이 미비한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벗어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부 다 동의하는데 두 번째 2000억의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님은 주의를 주셨고요, 이정문 위원님은 제도개선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보증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공급 목표 대비 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그 결과 국가재정으로 투입한 7600억 중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 간 조율을 통해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당초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정부 재정을 출연

받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주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주의가 저희는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37페이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동 사업은 대위변제 사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지적사항을 보시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를 살펴보면 상품 모두에서 전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그리고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중이 증가하였고, 구상채권 회수 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5~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향후 피보험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잠재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추후 연간 기금의 대위변제 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잦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39페이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재고자산 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융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을 말하는데 2024년도 계획액 1조 332억 원 중 216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청산 일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 귀속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40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도하고 두 번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세 번째,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설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전 국회에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협업 재정모형을 설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충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하셨네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의하고요. 마지막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구조공단의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협업 재정모형을 재설계하라’ 하면 이 부분이 관계부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패스트트랙으로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서 인력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영 위원 그러면 재정모형 설계를 빼 버리면 돼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인영 위원 ‘협업하여’ 이러면 돼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법무부와 협업하여’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해서 동의하시는 걸로?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금융위원회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하십시오.

○ 柳榮夏 위원 금감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사권 같은 게 있나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법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柳榮夏 위원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사한 적은 없어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통상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 柳榮夏 위원 독자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결산할 때 일단 공식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감독원 감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위에서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신 거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것을 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최소한 공공기관에 준할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기관에 준하게는 하고 있더라고요.

○ 柳榮夏 위원 앞으로 금융위가 아마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전에도, 금감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분에 넘치게…… 그런 부분을 금융위에서 손 놓고 있으면 금감원은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4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 이후삼 정무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는 국무조정실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경비 전용으로 확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다른 예산의 전용이 아닌 별도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점검·관리는 대통령 공약에 기반하여 수립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사업 및 비목에서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주체 및 행사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에 정부 측이 동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평가결과 중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으로 5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거나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일을 초래한 기관 등을 포상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은 첫 번째,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중앙기관이 자체 평가결과를 보수체계에 충분히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집행 점검에 부응하도록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가 각각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4페이지입니다.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테러대책 위원회와 대테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테러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은 유튜브 영상제작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하는 것이 유일하며 해당 영상의 조회 수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무·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 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고 해당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여기 두 가지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남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남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4년 12월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 완료된 과제가 45.7%에 불과하고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집행률은 2024년도 31.5% 였고 다른 내역사업인 발굴 규제 검토·개선 조정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집행률은 24년도에 29.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액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조직 신설 시 기준에 존재하는 유사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세 가지 각각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8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계약 잔여 이행분이 불확실할 경우 선급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위반, 과도한 과업내용의 변경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여지가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다음 2-1과 2-2는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시정요구 문안을 수정해서 동의하면서 시정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그런데 문안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죽 얘기를 해 주시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국무조정실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위반, 공정성 시비, 과도한 과업내용의 변경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정부 측에서 그런 내용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柳榮夏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봤어요? 왜 특정업체랑 이렇게 유착 의혹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해 봤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가 개요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23년도에는 탈락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매년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렇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유는 뭐라고 그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게 관례나……

○**柳榮夏 위원** 아니, 관례는 규정이 없을 때 관례가 적용되는 거고요. 규정이 있으면 공무원은 규정을 따르는 거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규정을 위반한 이유가 뭐라고 소명을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柳榮夏 위원** 예, 설명하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말씀하실 때는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송현규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규정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소명서 징구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했을 때 단지 규정을 숙지 못 해서 도과시킨 것, 간과한 것하고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좀 달라요, 결과는 똑같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과하다고 보는데, 다만 총리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면 구두경고를 해도 되고 불문에 부쳐도 돼요.

그런데 지금 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 관련 업무를 정말로 처음 배정받아서 몰랐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됐는지는 다른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자체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것 시정해서 그 내용 좀 보고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조금만 보충을 해서,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지적돼 있는데 문제가 된 두 가지의 담당자가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각각 다른 분입니까?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위가 될 수 있는…… 선급금의 80%를 지급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고, 대관료를 행사장 관리를 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같은 사람이 두 가지의 그런 비위혐의……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제가 그것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행사의 1년 용역비가 1억 6000으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1월 달에 회의가 급하게 잡히면서 1월 2월에 연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민생토론회라는 우리 주최 행사가 연속적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 두 차례 회의에 원래 1억 6000에 잡혀져 있는 일반용역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성금을 지급했어야 맞는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다 보니 거기에 준해서, 그 상황에서 꼼꼼히 챙겨보지 못하고 업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하니 그냥 으레 선금으로 지급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기성금으로 지급해야 맞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체 특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2023년도에는 작년에 선정된 그 업체가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사실은 탈락도 한 그런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몰아주기다 이런 특혜 의혹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작년 7차 회의 때는 여기 지적돼 있듯이 과업을 분리해서 했다 그 측면은 저희가 당초에 7차 혁신전략회의 때 세목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되어서 일반용역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부득이하게 갖다가 사용을 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는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게 석연치는 않은데, 충분히 해명은 되지 않는데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 의원실에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과장 송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감사원 감사는 제가 칠회하는 걸로 하고.

그 앞의 부분은 시정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시정으로 하시는 걸로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소위원장 이정문**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어쨌든 시정으로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건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柳榮夏 위원** 차장님,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원상회복하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저희 생각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이 있다 없다는 아직 저희도 자체점검을 더 정밀하게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저희가 총리실이다 보니까 대통령 행사를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내부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레서피(recipe)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추진방식과 관련해서 뭔가 손을 대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하겠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개인의 문제들은 지금 비리다 아니다,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점검한 다음에 판단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추징이든 원상복구든 회수든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뒤에 추진방식 변경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이인영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것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총리실에서는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9페이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ODA 통합 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ODA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초에 국회에 보고되지만 이 종합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은 제안 자체가 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면서 주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2번은 원안대로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내용이 주의의 내용이니까 주의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것,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재정비·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승인받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갖추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인재 DB를 통해 청년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위원 선임 실적이 저조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의 정기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재단법인 청년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 및 사무편람 승인 과정,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 과정에 대한 청년정책조정실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청년인재 DB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번은 제도개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1·2·3은 전부 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9월에 청년실에서 해당 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안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주의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지요, 본인들이 감사를 한다는데.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 주신 대로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1기 위원 임기 종료 후 2기 위원 선임이 지연되었고 회의 등이 서면으로 대체 및 축소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중 4억 46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정기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 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 동그라미 두 개를 합해서 동의하는데 주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한 문안은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업의 정책 공백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법정기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그래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사업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법률에서 정한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지원단이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원단 상설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근거 법률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시정요구 두 가지가 근거 법률을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저희가 제주특별법을 지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지요.

○ 소위원장 이정문 두 개의 각각 의견이 아니라 하나로요?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둘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 소위원장 이정문 각각 제도개선 2개?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한 다음에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문구는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문구를 정리 한번 해 보시지요.

○ 柳榮夏 위원 그건 그냥 위원장님한테 일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첫 번째 문구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로만 해도……

○ 소위원장 이정문 다 포괄이 되나요?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뒤의 동그라미 부분은 삭제하고 앞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용만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나 주의 둘 중의 하나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시정요구를 드렸지 않

습니까, 점검 보고하게. 그런데 그것까진 필요없을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려면 제도 개선이나 주의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아까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주의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까 주의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1번 부분도 정리가 된 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구체적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신규 위원회를 편성하는 경우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동의합니다만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더 적절한 개선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기 1년의 위원회 회의를 위해 별도의 서울회의실을 9개월간 임차하였는데 활동기간이 짧은 임시조직 운영 시 별도의 상설회의장을 신규 임차·공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세종회의장 또는 유관기관 시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동의하면서 유형은 주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장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해체됐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폐지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폐지됐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주의로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 측은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처의견은 서면에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의로……

○柳榮夏 위원 주의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제도개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국무조정실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고 기존 온라인 청년 플랫폼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신규 편성·집행하여 중복·과다 계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통합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정보화 사업 편성 시 전체 구축 계획 로드맵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고 유사 플랫폼·센터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1번에 대해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동의합니다. 2번은 주의로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7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사업은 창의적 조직문화의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 예산 8억 96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활동지원 횟수도 축소되면서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인턴 지원정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주의와 시정 중에 주의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의견이 두 개인데요 주의로……

○김용만 위원 불용이 일어나고 주의로 하는 것 다 좋은데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의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의견을 하나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8페이지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8월 최초 설치된 이후 7차례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임시 조직의 활동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위반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감찰이라는 목적 외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지적입니다.

19페이지 시정요구안입니다.

조직 근거와 관련해서 향후 훈령 개정을 통한 활동 기한 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의견과 부패예방추진단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경우에는 부패예방추진단이 전 정부 감찰용으로 부적절하게 활용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번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을 전제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일단 3번은 제도개선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1·2·3번과 2번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단 부패예방추진단이 계속 국무총리 훈령으로 존속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시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 정부 감찰’ 일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추진단은 201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11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전 정부를 감찰하느니 하는 언론 지적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더 이상 훈령을 통해서 연장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제에 반영하든, 그게 행안부로부터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훈령을 통해서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 훈령상으로는 27년까지입니다만 저희가 내년까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차장이 내년에 이것 폐지한다는 것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폐지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직제로 들어올 수 있으면 내부 직제화하고 그거는 대통령……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정식 조직이 되면 존속이 되는 거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직제 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지금 훈령은 2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그 결정을 내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柳榮夏 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부대의견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2025년까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올해까지입니다—정식 직제화되지 못할 경우 2026년에 조직을 폐쇄한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 국회에서 드린 부대의견일 겁니다.

차장님 잘 아시다시피 임시 조직을 훈령으로 하는 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지요. 여태 계속해서 훈령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추진단에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한 30여 명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방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어떤 인원이 보고 안 돼도 괜찮아요.

총리실에 민정실장님 계시지요? 민정실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따로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민정실에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아마 경찰은 있는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훈령에 보면 임시 조직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홈페이지에 인원과 기구를 게재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지요? 지금 부패예방추진단, 이 조직과 관련된 것 국무총리실이나 그 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제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이게 조직이 좀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대테러 같은 거는 공지하라 그래도 저는 못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민정실이 있잖아요. 민정실 역할이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무슨 비밀조직이라고, 다른 부처는 규정에 다 돼 있잖아요. 규정을 안 지키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급기관이, 국무조정실에서 규정을 안 지키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각 부처가 규정을 어겼을 때 국무조정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차장님께서 자꾸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이미 차장님께서 모두에 내년까지 정식 직제가 반영이 안 되면 연장하지 않고 조직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하셔서, 이분들 신분을 누구누구 근무한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다 활동이 뭐다 이 정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픈해도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근 위원 동의 곤란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26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훈령으로 연장해서 계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더 이상 훈령을 통해서는 연장하지 않는다.

○**김남근 위원** 연장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柳榮夏 위원** 저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차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인원하고 이것 공지를 해야 됩니다.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년까지…… 지금 차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홈페이지는 저희가 당장 가서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부대의견 안 달아도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026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서 운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더 이상 훈령으로 연장해서 존속시키지는 않는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훈령을 통해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김남근 위원**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한다라고 달고, 그다음에는 주의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주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전부 주의로 하고……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혹시 정리됐습니까?

○**柳榮夏 위원** 홈페이지는 지금 차장님께서 돌아가서 바로 시정한다니까 굳이 저는 부대의견 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김남근 위원** 그것만, 2026년 상반기까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훈령을 연장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로 한다.

○**柳榮夏 위원** 시한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원래 저희가 국회에서 의견을 드렸을 때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협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하고, 상반기에 협의가 안 되면 상반기 안에 이 조직 폐쇄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부터 이 훈령을 무시한 사람 징계 요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저는 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고위층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실무자 책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나 징계는 제가 과하다고 보는데, 다만 틀린 걸 지적해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하는 걸 국무조정실에서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걸 부대의견까지 다는 거는 국무조정실 입장이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빼

드리지만 직제를 언제까지 개편해서 안 됐을 때, 그거는 못을 박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안 1-1·2·3을 하나로,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번까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2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번까지 네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1·2·3과 2를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하나로.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0페이지입니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원활한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재 일회성 간담회 위주로 집행되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였다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와의 불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제도개선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두 가지 시정요구를 다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아니,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정 의견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제도개선으로 바꾸게 되면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이후삼 저희들이 지금 실제 사회대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틀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상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선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회대개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지금 총리실 산하에 만들기로 한 건가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이후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만들기로는 한 거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유사한 국정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이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그 소통체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행정기관으로 할지 자문기구로 할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라면 시민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던 내용이 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그걸 지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이후삼** 예.

○**김용만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시정 수준에서의 변화가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인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시정과 제도개선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지만 사업추진방식 변경이 시정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업추진방식을 이제 바꾸신다라고 들리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현실적인 이 조치사항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하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김용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1페이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64.7%가 법정기한을 도파해 처리되었고, 지방세 행정 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 사건 자료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 불복 소송의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 접수 외 대부분의 절차가 비전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담인력 확충, 전자심판제도 활성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제고하고 국세청, 관세청, 행정 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행정소송 처리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음으로써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전자심판제도 내 실화를 위해 전자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세 가지 각각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총리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17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한 말씀.

차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무조정실 의견을 들어서 거의 제도개선으로 많이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지켜질 거라고 보지만 이번 국정감사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드린 의견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거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柳榮夏 위원** 부대의견 달아서? 아까 부대의견 달기로 했잖아요. 부패예방 거기 부대 의견 달기로 하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아까 그냥 주의로 해 가지고……

○**柳榮夏 위원** 포함해서 그냥 주의로 하겠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네 가지 포함해서.

○**柳榮夏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은 아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인사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 이후삼 정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2011년에 190억이던 출연금이 2024년도에 34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를 산출함에 따라 예산액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 규모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셨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의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동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개인정보 교육 사업은 관련 예산 8억 3500만 원 중 7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법 개정안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은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문료를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교육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방안은 정책사업으로 하고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지원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동의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장단기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다만 시정요구 건을 고려해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번째 것은 동의지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다 동의입니다. 두 번째도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안과 관련해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주의로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 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제도 운영, 가명처리 기술 지원, 가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신규 지정 건수가 2021년 이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운영성과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매칭비율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감소 및 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먼저 시정요구안 1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별로 고려해서 본 건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국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점점 기재부에서 이것을 국비가 아니라 지방사업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지방비만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이 이 사업의 성격을 점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 지방이면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마이데이터 행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송체계 표준화 등 연계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관련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결과 제도 시행일까지도 전문기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고 2024년도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

이 상당히 부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과 분야,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향후 하위법령 제·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향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먼저 시정요구 1-1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시정요구 유형별 고려에서 본 견을 주의로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권리가 법에 들어왔는데 이게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의 확장으로 보는 측면하고 또 기업의 영업비밀 충돌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규제 심사를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좀 빠지면서 이렇게 시행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업계하고 인터넷협회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런 게 못 돼서 이것은 시정보다는 주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2-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선도는 사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게 마이데이터라는 법에 근거가 있지만 과기부는 아직 법에 근거는 없지만 또 예전부터 일찍 선도사업성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중복 안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일부 먼저 나간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부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시정보다는 앞으로 주의를 해서 좀 더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부위원장님, 그 예산을 76억 받아 가지고 결국 58억만 쓴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柳榮夏 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사업의 자금으로 통신하고 유통을 했는데 우리에게 쿠팡으로 대변되는 유통업체가 예를 들어……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만약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알리나 테무로 나가면 어떻

게 하나 이런 우려를 표명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유통이 선도서비스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선도서비스에서 일부가 빠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100% 못 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사업이 처음에는 개인정보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지금도 계속 인터넷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이런 측면이 있지만 기업에서는 기업 영업비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위는 기업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끌어 내서…… 그런데 유통이 사실 금융데이터도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유통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 부분의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입니다.

유통은 올해 예산은 없고요 27년 시행할 예정인데 26년부터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도 당연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정부 측에서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제도개선, 세 번째 주의, 이렇게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데에 동의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 대신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게 수준별 진단에서 평가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대상 기관 숫자가 약 700개에서 지금 S, A를 받은 숫자가 약 3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

개 기관이 A를 받아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평가제도를 처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게 평가를 통해서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개 정도 기관이 예전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개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 등에 따른 사실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1차 시스템 운영과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을 통합 발주·계약하였는데 통합 추진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모두 2차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특정 비목에 일괄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청 이유는 사실 이 낙찰차액이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1차 낙찰차액을 한꺼번에 2차로 썼다는 이 의미인데 이게 구별의 큰 의미는 없지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특정 일에 쓰이지 않게 일괄 반영되지 않고 1차, 2차로 나누도록 제도개선 하겠으니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가이드라인 해석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판례 등 해석자료 활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송무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확정예산 기준 79.5%에 불과하였고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에서 초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연말에 법률자문 및 법률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향후 행정처분 관련 소송수행 소요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제가 조금 한마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재작년에 구글·메타의 2차 소송이 있었는데 2차 소송기일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그 2차 소송 성공보수금을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사한 법률자문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주의를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11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기업이 해외자본에 인수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부대의견에 동의하면서 특히 M&A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각각도로 검토해서 잘 보호되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5건, 제도개선 6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부위원장겸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 과태료 세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과태료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 및 징수하는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16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24년 1심 판결 선고 9건 중 패소가 5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잘못된 법 집행이 미수납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처분 부과 대상자인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주의, 강민국·김남근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주의, 강민국·김남근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를 하는데 동의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의견으로 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아, 주의 의견으로 주셨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 등을 징수하는 항목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

을 기울여야 하지만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 또한 연말에 불과 5~7개 기관에 한정하는 등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제도개선 내용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쪽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대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3건의 사업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시정요구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주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총액인건비 이외의 경비인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고금 관리법령은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되어 국고금 관리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주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4년도 홍보비 예산은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분산 집행하여 홍보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께서 주의, 김남근·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시정요구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의로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말씀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처음에 홍보 예산을 잡을 때 연간·월별 홍보계획을 다 잡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답변 말고 실무자가 답변하시든가 나오셔서 답변 좀……

○소위원장 이정문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실 황인준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황인준 주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얼마씩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쭉 집행이 안 됐다가 12월 달에 몰아서 이렇게 예산 떨어 내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실 황인준 총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 계기로 한 다량의 홍보비를 집행했고요. 두 번째로는 2·3분기에 저희 권익위원회 홍보 성과를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집행이 11월, 12월에 다수 집행된 건들입니다.

○**柳榮夏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의 홍보 소위 말해서 기조가 뭐예요? 어떤 걸 홍보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가 어떤 활동을 한다,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계도해서 국민권익위에 국민들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권익위가 이런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성과를 위주로 홍보하는 건지 그 홍보 기조가 뭐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방자치단체든 정부 부처든 또는 나라든 간에 기존 홍보의 주제가 있어요, 어떤 걸 하겠다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반부패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12월 달에 예상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실 황인준** 반부패주간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미리 예정된 행사 아니었던가요?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실 황인준**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이런 행사가 준비되면 그 준비 단계가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50%가 12월 달에 예정돼 있는 반부패주간 회의를 위해서 홍보예산을 땠던 건가요?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해서 예산 받아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홍보담당관실 황인준** 예.

○**柳榮夏 위원** 이걸 실무자한테 제가 추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들어가세요.

처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권익위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쓰겠다고 쭉 예산 항목을 갖고 와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피치 못해서 아니면 조금 과하게 잡았거나 또는 예산이 예정됐다가 취소되면 불용 처리해서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구청처럼 맨날 보도블록이나 깨부수고 다시 하고 이런 것, 더군다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주의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6쪽입니다.

일반회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보다 크게 낮은 85.2%에 그쳤으며 자산취득비 등 32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당초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전체 118 개 행정심판기관 중 28개 기관이 불참하여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장식·유영하 위원께서는 시정, 김남근·이정문 위원께서는 주의, 김현정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 편의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행정심판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장식 위원은 시정, 김남근·이정문 위원은 주의, 김현정·이현승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말씀 잘 명심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국가 행정심판 수행기관이 123개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의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미처 다 담아 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수행하겠습니다.

동의드리고요. 주의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주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柳榮夏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3개의 의견 중에 주의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개를 다.

○柳榮夏 위원 올해 국민권익위 예산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7쪽입니다.

일반회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은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특히 국회가 심의·확정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를 임의로 세목 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2023회

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 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 조정한 것은 국회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강일·허영 위원께서 징계, 김남근·이정문 위원께서 시정, 이인영 위원께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시정요구 주신 내용의 말씀들은 저희가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2030자문단 사업과 관련된 공문이 전 부처에 내려왔고요. 공문의 내용에 이미 유사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포함해서 운영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미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30자문단 운영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편성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2030자문단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견을 주신 것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정부 원안대로 주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남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국무총리실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약간의 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처리가 좀 안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서 이 사건의 경위를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실무자……

○**소위원장 이정문** 성함과 직위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서기관입니다.

2030자문단 사업은 2023년도 9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하라고 공문이 왔었고 문서 내용 중에 기존에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면 그 사업과 합쳐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국무조정실의 문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이 유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대로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되고 또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표현을 2030자문단 운영으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 징계로 하시는 것은 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책정했던 예산항목을 국회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약간 고의성이 있으면 예산의 전용……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관례에 의하면 횡령도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책정한 것을, 예산항목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안 쓰고 다른 항목에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23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아마 한 11월 달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문구를 2030자문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일반용역비를 일반수용비로 바꿨다면 지금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금……

○김남근 위원 아니아니, 그것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런 실무적인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전용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징계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

○김상훈 위원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시정으로 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柳榮夏 위원 시정 하게 되면 원상복구해 가지고 추징하든지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김남근 위원 사업추진방식 변경도 있고 하니까.

○柳榮夏 위원 하나 확인할게요, 서기관님.

담당 실무자는 있었을 것 같고 이 예산을…… 저는 김남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용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실무자의 개인적인 판단은 아닐 것 같고 아까 들어보니까 기재부하고 구두로 얘기도 나눴다 그랬는데 이것 하게 되면 위에 결재선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결재선에서 이게 용인이 됐기 때문에 되지 이 실무자가……

이게 전결사항인가요? 이것 전결사항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이것 지금 항목 돌릴 때……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세목 조정의 전결 권한은 과장입니다.

○柳榮夏 위원 과장, 부이사관이 전결한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서기관입니다.

○柳榮夏 위원 서기관이 다 전결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예.

○이인영 위원 뭔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사업명을 통일시키려다가 생긴 문제지.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이것 제가 볼 때 고의성은 없을 것 같고.

○이인영 위원 고의성보다는……

○柳榮夏 위원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지금 과장이 전결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김남근 위원 시정으로 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그냥 주의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柳榮夏 위원 시정 하게 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 **김남근 위원** 아니, 추진방식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위원님, 기조실장직무대리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잠깐 제가……

○ **柳榮夏 위원** 설명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저도 오기 전에 23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정부에서는 국조실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주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은 대개 문서에 의한 결재선을 타기보다는 구두로 다 협의하면서 대부분 마지막에 결정만 당시에 과장이 문서로 남기게 되는 건데……

○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남기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서로 안 남기고 그렇게 사전으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추진방식을 계속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적어도……

○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 **김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정은 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추진방식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지요. 국회가 어렵게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정했는데 국회가 심의한 것을 가지고 국회가 심의도 안 한 새로운 사업에다가 전용을 하면, 그것은 문서로 남기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주의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징계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쳐도 시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양종삼** 주의만 주셔도 저희는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되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 **김남근 위원**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柳榮夏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네요.

○ **김상훈 위원** 주의 의견 주신 이인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 **柳榮夏 위원** 주의 하면 될 것 같은데.

○ **김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의 합시다.

○ **柳榮夏 위원** 김 위원님, 우리 발언……

○ **김남근 위원** 징계도 있는데 지금……

○ **柳榮夏 위원** 발언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 **김남근 위원** 예?

○ **柳榮夏 위원** 발언 안 하기로 했잖아. 그냥 주의로 넘어가시지요.

○ **김남근 위원** 저 지금 이것 딱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아까 하고.

○ **이인영 위원** 아니, 주의만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느낌이 좀 싸한데……

○ **김남근 위원** 지금 이것 징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 **柳榮夏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고의성이 없잖아요.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물어봤잖아. 고의성이 없잖아요.

○**김남근 위원**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지.

○**이인영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다른 부처도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일반적으로 나타났어요?

○**전문위원 최기도** 아까 설명으로는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2030자문단 운영을 해라라는 게 전 부처에 뿌려졌고요. 다른 부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기재부가 해 줬어요.

○**이인영 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런데 저희는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거기에 담아서 해라라는 기재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당시에 예산 전용이 된다는 그런 인식은 없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랬던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럴 수 있어요, 법률가가 아니니까.

○**김남근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기재부가 했던 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권익위처럼, 거기는 많은 법률가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다른 것으로, 원래 해야 될 예산들을 거기다가 전용한다는 것은 좀……

○**柳榮夏 위원** 전용해서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을 다른 부처처럼 그냥 자문단 사업으로 탁 변경해서 하면 되는데 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다른 부처에는 청렴정책 모니터링과 유사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게 없었지. 사업 자체가……

○**김남근 위원** 아니, 청렴에 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고 청년들의 의견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이인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표현이 곧이곧대로 그런 표현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인가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그 이전 정부도 청년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등등 해서 청년인턴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 가지고 쭉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권익위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고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네이밍으로 쭉 정돈해 들어갔을 텐데 권익위도 그것에 맞춰서 정돈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정돈을 안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해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나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위원님, 제가 다른 부처에는 그게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 9월 달에 국조실에서 문서가 오고 그다음에 몇 달 사

이에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정책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2030자문단 운영으로 단어를 바꾸고 그다음에 일반용역비를 일반수용비로 몇 달 사이에 바꿨으면 지금 문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안 바꿔서 생긴 문제인데 왜 안 바꿨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조금 실수고 그 부분 체크를……

○**이인영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김남근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실수가 아니라 바꿀 수 없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아닙니다. 바꿀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니까……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데들은 국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왜 그것을 전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재부한테 따로 예산항목을 책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겠어요. 그것은 아무튼 국민권익위가 고의가 없다 쳐도 너무 안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주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을……

○**柳榮夏 위원** 주의를 줘야 앞으로……

○**김남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계를 해도 될 것 같아.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위원님** 위원님, 앞으로는 이내역사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처장님의 정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좀 믿으세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도 정리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현정 위원님.

○**김남근 위원** 저는 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柳榮夏 위원** 다수결로 하시지요.

○**김남근 위원** 예, 다수결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10쪽에 비슷한 유형으로 세목 조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쪽도 같이 논의를 하시고 한꺼번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쪽의 사업과 같이.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10페이지 한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부패·고충제도개선 사업입니다.

부패·고충제도개선 사업은 불합리한 법령·행정제도 및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 기한이 도래한 186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 수는 82개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 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 수도 17건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일반회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입니다.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과 국민콜110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민원상담위원은 위촉직임에도 고용부담금 비목에서 사회보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원 상담위원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민원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콜110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 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 방식이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상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께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2개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이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의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일반 국민, 미래세대 등 대상의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가 예산 액의 2배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초등학생 청렴캠프 신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합니다.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해 당초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방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영 위원께서는 징계, 김남근 위원께서는 시정, 이인영·이정문 위원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혜량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도 좋을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연수원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교육지원과장 황민아 안녕하십니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황민아 서기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명칭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이외의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 대상으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안의 내내역사업으로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일반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미래세대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기존의 대학생 청렴인재 아카데미라는 토론 경연대회 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청렴캠프를 해서 학생들이 캠프활동을 통해서 청렴의 여섯 가지 핵심 덕목을 체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시도를 해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일반용역비보다 조금 더 많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역사업 내에서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해서 집행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柳榮夏 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학생 청렴캠프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누가 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청렴 캠프를 한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물론 공직에 계셔서 아마 여기 증언대에 서서 말씀을 다 못 하실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디어가 과장님 선에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실무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위에 보고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도 안 돼요. 감히 실무자는 이런 것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교육지원과장 황민아** 저희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청렴 홍보·확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초등학교 방학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청렴캠프를 시범운영했는데 그게 학부모라든지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청렴캠프를 통해서……

○**柳榮夏 위원** 그렇게 호응이 좋았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교육지원과장 황민아** 예,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고 그래서 올해는……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걸 기본 예산을 잡을 때는 안 잡으셨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이런 캠프를 하게 된 그 경위를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거기서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캠프를 해서 좋은 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왜 편성하겠어요? 예산편성할 때 다른 예산의 세목이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갖고 와서 이것 꼭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좋은 게 있었으면 그때 이걸 넣어 갖고 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예산을 잡았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간 경위도 석연치 않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봐야 과장님 답은 똑같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듣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7번하고 10번이 유사한데 또 같은 부서예요, 청렴정책 담당하는 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교육지원과장 황민아** 다른 부서입니다.

○**김남근 위원** 세부에서는 그렇지만…… 권익위가 여러 사업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청렴정책을 하는 데가 이렇게 청렴하지 않게 예산들을 운용한다는 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다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보통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기재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내년에 하지 않고, 긴급하게 예

산을 2배로 늘려서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면 당연히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룰과 시스템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그 룰과 시스템에 의해서 공모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데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괜찮은데 우리 예산 2배로 해서 하자’ 그러면서 예산 2배로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공모 시스템을 신뢰하겠어요?

아까 7번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걸 하다가 갑자기 다른 예산을 갖다가 그걸로…… 다른 부서들은 다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권익위는 ‘우리가 보니까 이것 다른 걸로 쓰면 되겠네’ 그리고서 한다는 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국민권익위라는 데가 청렴하게 일들을 하지 않는다, 청렴하게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청렴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시정으로 해야 된다……

○**柳榮夏 위원**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으면 시정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후로부터 향후 미래의 기한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건 이미 사업이 종결된 거잖아요. 종결돼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추징, 회수, 원상복구 이런 게 있거든요. 사업추진 변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추징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못 돼요, 이미 했으니까. 결국은 비용 추징하든지 회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수는 이미 썼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추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징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남근 위원님 말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정조치에 담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잘돼 가지고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는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금액이 적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반복됐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지적이 안 됐으면 그전에도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듣기 조금 억울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정조치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이 건에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추징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담당 부서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단계를 낮춰서 주의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처장님 관할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시정 내용 중에 추진 변경이라는 것은, 이게 내년에도 있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청렴교육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분해서 해 두었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사업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와 가지고 해야 될 때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 항목을 확정해서 한다 그게 추진방식의 변경이잖아요.

○**이인영 위원** 이미 변경했다잖아요.

○**김남근 위원** 내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인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징계사항이나 변상사항까지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정하는 게 맞아요. 꼭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 보면 시정할 방법이 없을 수는 있는데 권익위 부처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비목 변경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관행을 명백히 시정해야 돼요, 이 청렴사업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못을 박아 버리는 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 여기서 이 사안 자체는 주의로 하고 그 뒤의 부대의견에서 여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부대의견을 강하게 달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하고 부대의견에 전에 김남근 위원님이나 한 내용을 담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무처장 조소영**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앞의 7번하고 10번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로 하고,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부대의견에서 더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1쪽입니다.

일반회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입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은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기관별 운영·이행실태 점검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청렴 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 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조차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은 신고사건 처리와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영하 위원

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와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민병덕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제도개선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이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은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제도 운영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위반신고 접수처리와 이행실태 조사의 과정·내역·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18조(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예산집행 점검절차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강준현 위원께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입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제15조 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신고의 접수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조차도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행 법률상 우리 위원회가 특정 신고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저는 권익위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국회가 조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가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가리고 제출할 수 있잖아요.

○**柳榮夏 위원** 개인정보를 가려도……

○**김남근 위원**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딱 그 부분에 대한 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차례 권익위가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출하라는 자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주의로 하는 건데 주의도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건 국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면 좀 오만하다 이렇게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柳榮夏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柳榮夏 위원**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런데 신고 내용을 가릴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신고 내용을 안 가리게 될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으로 이게 누군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히 되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옛날에 일선에서 수사를 할 때 보면 이름을 가리고 익명으로 투서를 해도 내용을 읽어 보면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상대방은 이것 누가 했는지를 금방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아마 그 위험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라는 저희 의견보다 여기 내용상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 여기에 지금 권익위가 ‘이것은 현행법상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장 조소영**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권익위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신고 내용을 다 가리고 주면 그건 저희가 받아 볼 실익이 없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되면 공익신고를 안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공익신고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지가 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내가 신고한 걸 상대방이 금방 알게 될 텐데. 이것은 저희가 권익위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제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잠재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柳榮夏 위원** 그것 이의하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국회로도 와요. 아마 위원님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 어디 부처에 뭘 진정을 했는데 그 부처에서 잠자고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권익위가. 그러면 권익위가 본의든 본의 아니든, 고의든 고의 아니든, 정략적이든 정략적이지 않든

태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법정 신도 아니고 권익위가 이런 조항을 평계 대고 그 뒤에 숨어서 태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권익위 편의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런 사건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자료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신고사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신고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태업은 하지 않고요 열심히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저런 식의 말꼬리 잡아서 반박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그냥 일반적인 추상화된 표현으로 한 거고 그런 태업의 사례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은. 그런 것 자체를 확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태업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말꼬리 잡고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죄송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 식의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법리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권익위 놀고 있다, 그동안 정략적으로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권익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비밀누설 금지라든가…… 이게 이전의 김 국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있었던 문제잖아요, 꼭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신 김 국장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 조항을 평계로 해서 다 제출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법리적인, 원리적인 충돌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권익위 해석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김상훈 위원 주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동의하기 곤란하다면 권익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시정요구 말씀이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권익위원회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된다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柳榮夏 위원 처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더디니까 국회의원실로 그것을 보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신고 결과, 신고한 것을 해서 신고 처리에 대해서 통지 제도가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柳榮夏 위원** 그리고 그 통지에 대해서 이의하는 이의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권기현** 예,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있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자기가 공익신고한 것을 보내 주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게 공개를 해도 된다고 저는 수인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공익신고를 해서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도 지난번 사건 중에서 권익위가 줄도 되는 자료를 갖고 실랑이를 할 때 조금 느낀 게 있었는데, 다만 이것은 제일 끝에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협조하겠다 그래 놓고 다음에 자료를 안 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아마 권익위에서는 상정을 해서, 지금 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익위 입장은 전혀 도외시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김남근 위원** 처리와 관련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柳榮夏 위원** 그 정도 넣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김남근 위원님 말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 그렇게 하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사무처장 조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건지는 사안 사안마다 서로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강준현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특정 누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 중에는 접수한 다음에 며칠 내에 처리했느냐, 그런 자료를 내라,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를 내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인상은 권익위가 지난 정권 동안에 국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 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령에 위반되는 건지는 계속 사안 사안마다 다뤄 보는 걸로 하고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지켜야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조소영 부위원장님,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부위원장님의 답변이 중요한데, 그게 중심이 실려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일일이 사안마다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답변하라고 그러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사무처장 조소영**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권익위원회가 업무 분야가 너무나 독특하게 세 분야라서 제가……

○**김상훈 위원** 그래도 사안에 대한…… 이 자료는 이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권익위를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앞으로는 부위원장님이 직접 하시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위주로 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해서 시정요구 문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보상금 신청 인원이 8명에 그쳤고 그중 지급요건을 갖춘 신고사건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포상금 관련 비목이 일원화되었으므로 예산 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께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4쪽입니다.

일반회계 행정심판운영 사업입니다.

행정심판운영 사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특히 재정경제, 국토해양, 환경문화 등의 재결사건은 평균 80일 이상의 처리기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이정문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경상비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라는 내용으로 강준현 위원께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의견에 동의 곤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앞뒷단의 얘기들이 좀 있었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체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원위원회라는 합의체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자유 토론에 의거한 합의제기구입니다. 그 운영 체계를 그 정신에 맞게 제도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문구를 수정하지 말고 삭제를 합니까?

○**柳榮夏 위원** 이거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급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단다는 자체가……

○**소위원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柳榮夏 위원** 정부 기관장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부대의견은……

○**柳榮夏 위원** 앞의 단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정문 위원장님 것만.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고요.

아까 7번, 10번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추가하기로 한 것이……

○**柳榮夏 위원** 그거 달아야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 문구 정리됐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추가해서 추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거 추가하는 걸로 해서……

○**김남근 위원** 여기에다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柳榮夏 위원** 아니, 그것은 의견에 들어가고 아까 이인영 말씀하신 것, 시정요구한 것.

○**소위원장 이정문** 그것은 시정요구사항에 들어 있고 7번, 10번……

○**柳榮夏 위원** 예산 비목 전용한 거……

○**김남근 위원** 기재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 내용을 아까 추가하기로, 부대의견에 넣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최기도** 그 내용 반영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비목 신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비목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자주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

○**이인영 위원** 예, 타 사업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두 번째 부대의견은 지금 빼자고 그러시니까 그게 의견이면 저도 그렇게 따르기는 할 텐데 이 지경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 부위원장님, 제가 작년 국감 때 정승윤 그 분이 외부 청렴교육 강사비로 1년에 수천만 원씩 수령을 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전에는 국장들이 외부강사 할 때는 강사료를 받지 않았는데 규정을 바꿔 가지고 본인이 받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냐고 벌금을 내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치는데 임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겸사무처장 조소영** 제가 부패방지 쪽은 확인을 못 해 봤고 저는 행정심판 업무를 하는데요. 전국 법전원에 특강을 나갑니다. 그런데 강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현정 위원** 그러면 그 근거 규정이 뭔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것도 청렴과 부패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규정을 만들면 다 괜찮은 건 아닌 것 같고 모럴 해저드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새 정부에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회겸사무처장 조소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2건, 제도개선 6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소영 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영현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서는 각각 기관별로 감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를 감안하여 통합감사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처럼 감사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들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보다 수의 계약의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수의계약의 요건이 국가계약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3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수탁용역수입이 계획에 비해 실제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다는 문제점과 일부 기관은 수탁용역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간접비 초과분에서 발생하였는데 간접비의 증가는 직접비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8개 기관은 예산편성 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간접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4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6% 이상을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기관은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미준수 기관이 20개 내외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17개 기관은 5년 연속으로 우선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의무라는 법률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5쪽입니다.

수시연구사업에 대하여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행정연구원의 경우 적정한 사업 관리 및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의 예산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함께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6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

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연구기관은 장애인근로자를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7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은 각 기관별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국외여비로 일부 기관은 교육훈련비로 실시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을 각 연구기관이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산업 지원예산이 대폭砍감되어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산업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8쪽입니다.

연구개발적립금 예산입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수입의 초과 달성, 비용 절감 등을 재원으로 하고 2024회계연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전체의 연구개발적립금은 총 327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315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되는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이내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과 현행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자체 사업에 40% 이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은 기관발전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편법적 증액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이 중장기 연구과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연구 지원, 인프라, 교육훈련사업 등 각각 사업에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비율을 정하는 등 소관 연구기관 개발적립금 관리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산업연구원 소관 사업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인도네시아 파견인력도 당초 예정 인력과 다른 인적 구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산업연구원은 사업 지역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확인을 할게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柳榮夏 위원 산업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이 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있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센터장은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나간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1명 나가 있나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센터장은 저희 연구원 소속입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몇 명 나가 있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1명 나가 있고 연구회에서 1명 나가 있고 대한상의에서 1명, 이렇게 3명 나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희가 만나 봤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저도 그때 위원님 봤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왜 나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파견 직원들 인건비, 체재비, 유지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대충 예산 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지금 왔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7억 45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산업연구원에서 쓴 것만? 품목별로 얘기 좀 해 볼래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작년 예산액이 7억 4500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10월에 1억 88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집행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때 저희가 만나 봤잖아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柳榮夏 위원** 만나 보고 위원들이 돌아서서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왜 파견 나갔는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갔거든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그 사업이 원래 작년에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柳榮夏 위원** 연구원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또 정부 간의 네트워크……

○**柳榮夏 위원** 아니, 산업연구원이 가서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지 법인들 다……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그러니까……

○**柳榮夏 위원**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현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아세안에서 산업연구원이 갖고 있는 현지 네트워크가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각 기관에 있는 싱크탱크들과 정책 디이얼로그……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알고 있느냐고, 싱크탱크.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제가 기관들 이름을, 명칭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가마다 있는 정책연구 싱크탱크들 간의 협력관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柳榮夏 위원** 그래서 그 싱크탱크랑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했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지금 전기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이얼로그 대화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에 처음 파견 나가서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柳榮夏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쉽게. 산업연구원이 안 나가면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네트워크는요 일반기업들이 더 잘 해요.

여기 대한상의 나가 있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같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런 네트워크는 대한상의나 현지 법인들이 더 잘해요. 원래 산업연구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이 뭐냐고. 정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산업, 통상, 기술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하는 데예요, 연구하는 데. 네트워크 까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날 제가 질의드렸던 것 기억 나시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돌아와서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갖고 참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부서까지, 금융위에서 가고 다른 부서는 백 보를 양보한다고 그래도 도대체 산업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 놓고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1명도 동의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서 기재부로 넘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번 예산은 삭감할 겁니다, 전체를 다. 그전에 한-아세안 협력센터에 산업연구원이 꼭 가서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력 배치할 때 기재부도 가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처음에 공무원들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처음에 돼 있었지요? 산업통상부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가게 돼 있고. 맞습니까?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가 있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공무원들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회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금융위원회랑은 다른 겁니다. 저희는 금융위원회는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다른 부서는 안 나가 있는데 산업연구원이 꼭 나갈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기재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나갈 때는 한-아세안 정책연구센터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기업에서 나가서 네트워크를 하고 대한상의에서 나가서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데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는 안 하고 가서 네트워크를 깐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제가 네트워크라는 그 단어 하나만 써서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柳榮夏 위원** 그러면 가서 무슨 연구해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원래 연구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돼서 진행됐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이게 지금처럼 이메일 다 있고 영상통화 다 되는데 굳이 한-아세안 거기 가서 임차해 가지고 있어야 연구가 돼요? 한국에 있으면 연구가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나가시지 왜 혼자만 나가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제가 위원님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열심히 수정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요, 그것은 수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연구원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연구하시고요. 이 인도네시아 파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 제가 짚어 볼게요. 예산 없으면 못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세요.

○**산업연구원연구부원장 김천곤**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것은 제가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으로요?

○**柳榮夏 위원** 예.

○**소위원장 이정문** 일단 그러시지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0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만 마흔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590만 원의 모바일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에도 2024년 한 해에만 69종, 약 8700만 원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그 규모와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은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향후 적정한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1쪽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은 능률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5개 등급 미만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배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B등급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은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보고해 주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12쪽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2024년 예산운용지침 및 관련 지침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약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07년 출판된 문제집을 2022년 출판물처럼 허위 출판 실적을 제출하였고, 검정 신청 교과서에 헌법정신과 객관적 역사 서술 등의 검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2024년 검정을 통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감사원 지적으로 검정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은폐·방치 의혹이 있다는 지적,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자격 심사 및 내용 심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서류검증시스템 정비, 심사 위원 운영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국회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직, 인사, 예산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입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정관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부설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통제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설연구기관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거나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 설립의 입법례처럼 부설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4쪽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2024년 예산으로 2025년에 사용할 전자저널 및 학술데이터 비용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5쪽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2024년 연구개발적립금을 교육훈련 사업으로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6쪽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전액을 정규직 지원인력에만 지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급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의 신청 및 수료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환경연구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교육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8쪽입니다.

부대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거쳐 2026년 예산 심의 시 반영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유영하 위원님, 아까 뭐……

○柳榮夏 위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대략 내용을 주셔야……

○이인영 위원 골자라도 주시면 자구수정은 위임하면 되는데……

○柳榮夏 위원 ‘산업연구원은 한-아세안 정책연구센터의 파견을 철회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수정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의가 바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柳榮夏 위원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소위원장 이정문 그건 다음에 예산 때 하시지요. 혹시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충분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다 상황 파악했으니까.

○柳榮夏 위원 저희가 그때 가서 안 봤으면 그리고 어지간하게 이해가 됐으면 그냥 이미 파견되어 있고 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했는데……

산업연구원이 이게 말 그대로 연구원입니다, 경사연 밑의. 연구원에 있는 분이 거기 현지에 가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 우리 기업들의 외국에 나가 있는 법인들은 법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대한상의에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이 왜 나와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날 간담회에 갔던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여기에다 이것 뭐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가 예산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랏돈 무서운 거예요. 나랏돈이 내 돈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력 운영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꼭 필요해서, 이것은 내가 나가서 정말 국익이 된다 그러면 이것 아니라 뭐라도 저는 용인하겠어요.

그런데 조직 일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조직에 그 사람이 없어서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이 파견돼 있어서 그 조직이 더 발전되면 존재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연구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연구원, 다 박사급들 계시고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해외 파견 나가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라고 하면 그게 맞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비단 산업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놀기 위해서 파견 직책 만들어서 나가는 것 이것 다 잡아 가지고 돌려보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던 거지 어떤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안 갑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나랏밥 먹을 만큼 먹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의 예산은 제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잡아서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동안은 예산 안 나갑니까, 위원장님? 저는 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한은 못 박지 않았지만 그 부대의견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는 차라리 표결해서 이것 삭제시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 봤지만 그게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전부 다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인 정부 당시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의장국이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아세안에 대한 한국 진출을 돋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누가 파견 나가고 이런 것들도 다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 우리 당에서 거기 같이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그냥 예산 삭감하

고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김용만 위원**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부분들은 소명을 하게끔 부대의견을 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행을 하는 이유가, 지금 보훈부랑 공정위도 온 이유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시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을 하시면……

○**소위원장 이정문** 파견 이유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만 위원** 자료제출을 하시고요.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보고도 드리시고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담으시고 유영하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혹시 예산에 담겨 오면 그때 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저도 부대의견에 그렇게 단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제가 시정요구한 것, ‘검정 신청 자격 검증 절차 강화 그다음에 서류검증 시스템 정비, 심사위원 운영 개선 등 시정 필요하다’ 하고 동의해 주셨거든요. 이것 국감 전까지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박은아** 예,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어찌 되었든 예산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감 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전까지 계획 수립하여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박은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4건,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착석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세입입니다.

과태료는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세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과태료는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1년부터 2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는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은 주의, 이정문 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김남근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과태료 세입예산액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실효성 있는 부과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1번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두 번째, 일괄해서 다 답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가 요청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5년 8월 기준 역시 13.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회는 수차례 과오급금 수납실적에 대해 지적하였고 국가보훈부는 여러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는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은 주의, 강민국·이정문 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전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과 같은 내용들의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계 곤란자에게 분할 납부케 하고 또 연체금 등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상금 사업입니다.

보상금 사업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계오차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 현황, 제도 시행 시점, 지급인원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 추계방식 개선을 통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이강일 위원께서 주의, 김현정·신장식·이정문·이현승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상금의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3년의 증감률을 일괄 적용했다면 25년도부터는 3개가 아니라 81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증감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보상금이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제도개선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의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쪽입니다.

일반회계 생활조정수당 사업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과거 집행실적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액의 약 31%가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께서는 주의, 이정문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24년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유공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5쪽입니다.

일반회계 6·25자녀수당입니다.

6·25자녀수당 사업은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6·25자녀수당 대상 유형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되는데 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와 신규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 계획 수립 및 보고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준현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6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사업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등록요건 충족 및 상이 정도를 판단하고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및 심사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4회계연도에는 정부 비상 상황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23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산으로 심사기준 정립과 무관한 전쟁기념관 방문 및 무기체계 관람 등을 실시하는 데 약 13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보훈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심사 전문성 제고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와 무관한 외부 관람 활동에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하여 내부 징계 등 적정 수위의 행정 책임을 지게 하고 향후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중의 한 7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의 조직이랄까 무기체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면이 있어서 워크숍 당시 무기체계 강의도 듣고 국군의 계급과 편제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정보다는 주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보훈심사위원회를 군 계급체계나 무기체계를 모르는 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은 기본적인 수준의 군 계급체계나 무기체계를 아시는

분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그런 분들이 가셔 가지고서 지금 이런…… 사실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게 외부위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인데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훈부가 실은 여성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주의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실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향후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이게 결국은 국회 나오셔 가지고서는 그런 내용을 들으셔야만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과 함께 부대의견 넣고 주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 내용을 주의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내용 두 번째 줄의 담당자에 대해서 내부 징계 등 적정 수위의 행정 책임을 지게 하라는 말이 징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어서 이게 주의……

○**김용만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 시정으로 고려를 했던 건데 지금 보훈부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직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만, 사실 정말 최대한 이해를 하고자 해서 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을 부대의견에 넣어야만 주의로 제가…… 아까 얘기하신 자구 수정을 하더라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양해를 해 주시면 문구 수정을……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별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제가 지금 못 들어 가지고……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셔 가지고 둘째 줄의 ‘내부 징계 등 적정 수위의 행정 책임’ 대신에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다음에 주의 의견을 줬을 때, 시정요구가 있을 때 국가보훈부가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7쪽입니다.

일반회계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등록관리 사업은 전·공상이자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 및 등록을 결정하고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 사업은 신체검사 수검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 인원이 과다 추계되어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은 24년 36만 매 교체발급을 계획하였는데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474매를 발급하는 데 그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상 인원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께서는 주의, 이정문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홍보 강화, 대상자 안내 등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용만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 단계에서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남근 위원께서는 주의, 이정문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첫 번째 지적사항의 신체검사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관해서는 고엽제법 중에서 후유의증이 후유증으로 온 질병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광암이라는 게 있었는데, 실은 방광암 인원에만 수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악성 종양 전체를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안내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서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주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국가유공자 보훈등록증을 교체하면서, 지금은 42%밖에 되지 않는데 보훈등록증의 발급 제고를 위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과 2-2는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예.

○ 김상훈 위원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신 상태고 또 석식을 하기 전에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부처 의견이, 복수의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미 그냥 단순하게 동의의 의견이 나와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제목과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柳榮夏 위원 아주 탁월한 의견이십니다.

○ 김남근 위원 제가 미리 예습을 해 봤더니 다 동의였어요.

○ 김상훈 위원 아니, 몇 개는 동의 곤란도 있어요.

○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만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미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면 그 부분은 그냥 바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 소위원장 이정문 예.

○ 전문위원 최기도 8쪽입니다.

일반회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환자 검진의 주요 검사항목 시행 건수는 전년 대비 4108건 감소하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48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고엽제환자 검진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범위 확대 및 고엽제 검진 전담인력 추가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부처에서는 동의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하시지요.

○ 전문위원 최기도 9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선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4년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정 수준 감축할 것' 판정을 받은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의 보조사업인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사업 보조금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액하여 편성한 후 예산 확정 이후 동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의견으로 요구하셨고 부처는 동의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 재원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24년 계획된 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자연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월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 의견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1쪽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사업수행자에게 보훈대상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대납액을 모두 정산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운송업체와의 협의 자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어 개발 및 시스템 적용이 자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송기관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사업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소송에 대한 체계적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번과 관련해서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도 미지급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건의드리고, 2번과 3번은 동의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미지급금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 예산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정부안에는 미지급……

○**김용만 위원** 기재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정부안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해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혹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거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실은 미지급금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는 한 11억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올해, 이 연도의 미지급금 99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차관님, 그 내용을 사전에 기재부랑 조율할 수 있게끔 내용을 전달해 주셔 가지고 예산심사하기 전에 미리 좀 같이 정리를 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요구를 주의, 주의, 시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병원 진료 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진료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보훈병원 전공의 인력이 2023년 130명에서 24년 17명으로 급감하면서 보훈병원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보훈병원의 적자 규모를 각 보훈병원이 자체 재원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입니다.

보훈병원 진료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탁병원 진료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보상금 또는 수당에서 이용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추계 또한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은 올해도 추경으로 84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대신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거의 결산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정당국하고 잘 협조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안 터졌을 것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요? 추계가 어려운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보상금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로 이·전용을 했는데 이제는 보상금조차도 정확하게 81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올해도 추경으로 하지 말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잘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닙니다. 실은 올해도 이런 상황 같으면 추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추계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예산에 나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형 변경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주의로……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제목하고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있으니까요 시정요구안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보철구 지급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실은 지원단가를 한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실적을 반영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 전문위원 최기도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세요.

○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은 이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를 입으신 분인데 등급이 미달되신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산이 늘 부족해 가지고 정부와 재정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내용도 아무튼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주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를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16쪽, 일반회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대구보훈병원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실은 자기부담금을 우선으로 집행하도록 한 규정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지침을 잘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 전문위원 최기도 17쪽, 일반회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성과급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성과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불용 사례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것은 유일하게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안건 중의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이 B등급 기준으로 예산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립기념관장님이 B가 아니라 C나 D가 나오면 이게 불용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오전에 신장식 위원님께 가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동의가 곤란하다면 뭐를……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준상 성과급은 B일 때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장님이 평가를 B를 받으면 딱 금액이 맞지만 B가 아니라 C나 D를 받으면 훨씬 적은 성과급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불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정요구를 빼 달라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상훈 위원** 그다음 바로 또 있네요. 2개, 주의·제도개선 중에 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성과지표가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립기념관 업무성과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추가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신장식 위원님은 주의에 대한 동의가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이해는 하셨습니다. 오늘 와서 잘 설명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柳榮夏 위원** 빼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신장식 위원님 것은 삭제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저도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날, 광복회라든지 6·10만세운동유족회 등에서 독립기념관장퇴진을 요구하면서 독립기념관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래서 저희 천안에 있는 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는데 1시간여가량을 독립기념관 사무소에 정무위원회 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이 출입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들어가서 당시 독립기념관 측과 농성하는 분들과의 어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충돌 문제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름 중재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현장에서 중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독립기념관장께서 전직 원한테 보낸 메일 내용 중에 마치,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세해서 장기 농성을 벌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보고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것 저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도 보고 당시 중재하는 그런 입장을 한 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한 것처럼 그것도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 까지 보내서 한 부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 보훈부에서도 지난 금요일로부터 있었던 일 상세하게 한번 사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경위를 파악해서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과급 불용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해서 보훈부에서 동의 곤란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신장식 위원께서는 성과급 불용 사례가 발생하니까 성과급을 깎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불용 사례가 발생하니까 예산집행·성과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용 사례 발생 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관리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柳榮夏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B등급을 받는다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독립기념관장이 B나 A를 받으면 불용이 발생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과평가를 C나 D나 E를 받으면 이 돈은 당연히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신장식 위원님께서는 그런 성과급 관리 실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柳榮夏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끝난 걸 갖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 부분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18쪽입니다.

일반회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에 지급되는 급여와 경상비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제7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운동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편성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19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교부결정 절차 위반, 국고보조 시 자부담 원칙 위반,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 및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변상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율 적용 및 교부결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시스템에,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e나라도움 시스템 말고 저희가 실제 제출한 일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지적해 주신 대로 2024회계연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가 다 24년도 안에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여기의 100%뿐만 아니라 자부담이 모든 기관에 있었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e나라도움에 그런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e나라도움에 전산 입력을 잘못했던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산 입력은 가만히 놔 두면 아까 2024년, 그러니까 프린트한 날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사업……

○김용만 위원 아니, 국고보조비율 같은, 원래는 90%였던 것이 100%라고 적혀 있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거기에 그냥 표기가 안 되고 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모두 자기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대부분 제출하는 건데 학교에서 애초에 이걸 시스템에 입력할 때 그걸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고 또 우리 지방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야 되고……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본부에서도 했었어야 됨에도 그 확인을 못 한 앞장 한 장의 문제인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모두 구비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내용을 감안하면 당연히 변상은 아닌 거고, 그렇다고 제도개선으로 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주의로 가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주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0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국가보훈부 자체 사업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보훈부는 라이브 인 보훈 콘텐츠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제시한 부분을 즉각 수정·삭제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수강생에게는 정정 안내를 하며 향후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학계 검증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견 주시지요.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지적해 주신 바처럼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국가보훈부에서는 주로 현직 교사들의 수업안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교과와 연계해서 보조자료를 만드는 반면에 수원에 있는 보훈교육연구원에는 그 연구원에 오신 교원들이나 보훈가족들을 상대로 e러닝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목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내역에 맞도록 사업도 변경하고 또한 유사 사업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동의를 드리고.

3번의 라이브 인 보훈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24년도에 교육한 내용 자체가 약간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안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동의합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었으니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1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검토를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향후에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지방비 편성이랄까 부지 확보와 같은 사전 이행절차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2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획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독립기념관 내의 겨례의집 지하에 있는 국가발전사 디지털전시관 조성 연구용역의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참고로 해당 용역은 이미 종료가 됐고 올해 시설설계랄까 공사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아까 제가 앞쪽 부분 놓쳤는데 국가발전사 디지털전시관 건립 이것은 지금 중지가 됐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끝났고 올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말씀렸는지는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지금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자꾸 세계사적 말도 안 되는,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신경을 바짝 써 주신다고 이해하고 제가 주의로 변경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3쪽입니다.

일반회계 현충시설건립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충시설 건립 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에 자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24쪽입니다.

일반회계 현충시설건립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현충시설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수령 의무를 해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태준 열사 기념관은 사업 주체나 또 대사관을 거쳐서 건립 사업 기간을 올해 24년 12월에서 25년 5월로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고, 참고로 이것은 올해 9월에 개관 예정으로 개관이 끝나고 나면 조만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이것 결산보고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조만간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관이 끝나고 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에 누락이 됐던 부분도 그 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자료 달라고 했을 때 '9월 초 개관식 이후 정산자료 제출받을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제가 직원에게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이것도……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이것도 내용에 징계 관련 문구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아까와 비슷하게 '정산보고서 수령 절차 등 국고보조 관련 절차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이 정도로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그러시지요.

○김용만 위원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도 있고 부대의견에 붙여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것.

○김용만 위원 예, 사업 접행되고 난 이후 실적보고서 제출하는 것까지.

○소위원장 이정문 그 내용까지 시정요구안에 담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이것은 시정요구 문구로만 정리를 하고 부대의견……

○소위원장 이정문 시정요구안에 있는 문안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만 위원 차관님 의견을 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주의를 주시면서 실적보고서……

○김용만 위원 부대의견으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부대의견으로, 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5쪽입니다.

일반회계 현충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전수 점검을 통해 노후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되었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AI 디지털휴먼 활용 시나리오, 상시 서비스 모델, 교육 커리큘럼, 저작권 2차 활용 방안을 문서로 확정·제출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문체부·교육부·지자체 유사 콘텐츠와 기능 매핑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26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정부기념행사의 추진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제출 자료에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3년도에는 이·전용 없이 정부기념식을 모두 거행했는데 24년도에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이렇게 과다 전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건의드리고,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까와 비슷하게 직원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독립운동관련사업 등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민간단체 지원 평가기준(공통·신규·유지, 확대·축소, 제외)에 따라 헌법 가치 위반, 역사적 사실 왜곡 등 편향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훈부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는 향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

념사업회와 같이 역사적 사실 왜곡, 편향적 활동이 논란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훈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됐던 이승만건국 대통령기념사업회는 실은 연례적으로 탄신기념일과 서거추모일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인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의견은 둘 다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28쪽입니다.

일반회계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의전단과 실무원 통합을 포함한 의전단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29쪽 일반회계 국립신암선열공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 계획 누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의 신규 공사 추진 등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신암선열공원 옆에 경비실 신축공사하다 보니까…… 신암선열공원이 18년도에 대구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공원조성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경비실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신암선열공원의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등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의를 드리고 2번은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柳榮夏 위원** 제가 의견 조금 드릴게요.

차관님, 아까 제가 독립의 전당 때도 그냥 참고 넘어갔었거든요. 그거 지금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됐지요?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독립의 전당은……

○**柳榮夏 위원** 아직 실시설계 안 됐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조만간 될 겁니다. 올해 안에 됩니다.

○**柳榮夏 위원** 올해 안에 되면 올해 안에 공사 착공돼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것 하나 짚어 줄게요. 이것 언제 대구시로부터 이관받았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8년입니다.

○**柳榮夏 위원** 18년에 받을 때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실시계획 및 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모두 누락됐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국립묘지시설 설치 실시계획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갖고 있는데 국립묘지 소장한테 위임돼 있지요.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유달리 보훈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놓쳐 가지고 다시 추가로 설계해서 공사비 왕창 늘리고 공기 연장되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은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2023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이 경비실 신축공사가 굉장히 시급하다 아래 가지고 예산 신청했던 것 맞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거 신청하려고 하면 공원 실시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안 된 것 이미 2018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승계받을 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쭉 있다가 2023년도에 예산 떠는데 막상 예산 따서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있어 가지고 못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불용시켰습니다.

○**柳榮夏 위원** 불용했지요, 일부는 전용하고. 왜 이런 일이 보훈부에서만 발생할까요?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이 담당 주무관이 누구예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국립묘지과장이에요, 아니면 국립묘지사무소장……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까 말씀 주신 독립의 전당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국 소관이고 이것은……

○**柳榮夏 위원** 지금 신암공원 국립묘지과장입니까, 아니면 사무소장이에요? 누구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신암선열, 소장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그분 여기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2023년도에 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그러면 그때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됐다는 것. 그런데 올해가 2025년 아닌가요? 그때라도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사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안 생겼다고 보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변명하시려면.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예우정책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당시에는 그것을 파악을 못 했고요.

○**柳榮夏 위원** 그전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

○柳榮夏 위원 2018년도 받을 때?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 그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뭐 하러 관리를 승계받아요? 그것 기본 아닌가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조성하는 국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계획을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신암선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관을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관리……

○柳榮夏 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챙겨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柳榮夏 위원 챙겨 봤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안 챙겨 보고 쭉 있다가 2023년도 보니까 이게 안 된 게 덜컥 발견됐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발견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실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은 못 된 상황입니다.

○柳榮夏 위원 용역비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는 왜 예산에 집어 넣어 가지고 불용되게 만들었어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그러니까 공사비를 23년도에 정부안 요구할 때 실시사업계획서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

○柳榮夏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공사비 왜 신청했어요? 예산에 왜 넣었냐고. 지금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해서 용역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2023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작년에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작년에 경비실 신축공사 1억 6000인가 1억 8000인가 이거 왜 예산에 넣었어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이것 불용 처리됐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왜 그랬어요? 2023년은 그렇다고 치고 2024년도는 그때 왜 그랬어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23년도에 요구를 해서 24년도에 예산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예산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 24년도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2023년도 처음에 알게 됐다 그랬지요. 2023년도에 알았다며. 2018년도 승계받을 때 몰랐다며.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

○柳榮夏 위원 23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안 됐다고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뭐라고 호칭하면 됩니까?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우정책관입니다. 국장급입니다.

○柳榮夏 위원 국장님이라고 호칭 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순서가 먼저예요. 실시설계 계획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

○柳榮夏 위원 용역비 먼저 예산에 태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경비실을 신축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태웠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신암선열공원이라는 건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柳榮夏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대구잖아요.

그래서 조성돼서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다고 쳐요, 백 보를 양보해서. 그런데 경비실 신축하려고 보니까 공원 설계계획이 안 돼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지요? 밥 지으려면 쌀부터 안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태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며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실시설계 계획을 못 하게 되면 이 신축공사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을 태워 가지고 불용하게 만들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렵게 질문드렸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이것을 생각도 없이 본인들이 또 놓친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짚냐면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때 서울시랑 교환부지……

그리고 왜 자꾸 여기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기구도 커지고 여러분들 자긍심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일하시는 태도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자꾸 반복되면요 그 부서에 있는 부원들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공기도 늘어나고 쓰지 않을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옮길 때 이런 식으로 옮겨요? 제가 생각 같아서는 진짜 담당 직원 정계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실무자 다칠까 싶어서 이것은 넘어가요.

차관님, 이번 예산 할 때 다시 쟁여 보세요. 쟁여 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잡으세요. 그래서 기재부한테 얘기해서 우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예산 달래서 예산 확보하시고 예산 확보되면 이거 같이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면 순서대로 하세요. 자꾸 받아서 돌려보내고 엉뚱한 데 돈 쓰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은 저도 대구에 가 봤더니 그 경비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서 아주 열악해 보였는데……

○柳榮夏 위원 제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다고 2023년도에 자기들이 돈 달래 놓고 2년 동안 짓지도 않고 돈은 다시 돌려보내고 올해도 못 짓잖아요, 지금.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많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柳榮夏 위원 제 의견은 그냥 하고 여기 제도개선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정문 예,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30쪽입니다.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신규 국립묘지조성 사업이 자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국립묘지 건립 시에는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자연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연이어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횡성은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장흥은 총사업비 조정 때문에 자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이 자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국립제주호국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과거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1년 12월에 개원한 이후에 22년도에는 이장 신청이 늘었는데 23년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집행 저조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수업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과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전역자와 전직지원금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잘 협조하겠습니다. 주의를 건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기도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참전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4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3년간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도로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어려울 시 국가보훈부 자체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부는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1·2·3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은 24년도에 신규사업이었는데 그 학생들의 각인하는 내용 확인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연대, 조선대, 부산대는 올해 다 제막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시정, 주의, 제도개선 그리고 마지막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 첫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2023년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의 공개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월참자들의 제복과 관련해서는 제복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시거나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주의,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6쪽입니다.

일반회계 보훈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사업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연구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향후 생활실태조사 시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7쪽입니다.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위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업체 1순위 업체가 포기서

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가계약법 10조 2항 1호에 따라서 계약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사례가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그 위문 사업 전체를 단년도 위탁 용역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38쪽입니다.

보훈기금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홍보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육, 상담, 생활지원 등 실질적 복지로 전환하는 한편 유사사업과 중복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39쪽입니다.

보훈기금 보험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사전절차 이행 점검 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자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수원의 요양원은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충북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자연이 됐습니다. 대규모 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0쪽입니다.

보훈기금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 내용은 국가보훈부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 및 대상자 분류별 지원 예상 인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을 추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요구되었고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첫 번째, 민간요양시설 이용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요양 수요를 잘 판단해서 이용 인원과 단가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둘 다 제도개선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41쪽입니다.

부대의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된 사업 등에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부의 시설투자비를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 두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법령상 의무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 미설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여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 세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훈 병원 특성화 등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네 번째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4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다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모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리고 아까 부대의견 하나 첨부한다고 한 게 없었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문구를 수정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부대의견 2개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2개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6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31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다 착석하셨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일단 제목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뒤는 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미 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2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3쪽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한 내부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보직 배치에 유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했는데 제도개선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4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세 가지 시정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 제도개선, 주의,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세 가지 의견 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건 각각 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다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에 대하여 수탁연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도 김남근 의원님과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동의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6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김남근 위원님과 제가 주의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동의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 의견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7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하여 국회 결산 및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2건 각각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셨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8쪽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님과 저의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공정위 동의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9쪽입니다.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는 각각 2건의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2건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2건 모두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10쪽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는 유영하 위원님의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동의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하였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1쪽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당 정산 지역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 2건의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 또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이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정위 의견대로 1항에 대해서는 주의, 2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12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하여 연례적인 수입결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 의견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13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 의견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14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확대를 하고 제도의 과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1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를 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한국소비자원 출연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 중에 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정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동의 의견이고요.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주의 중에서 제도개선 의견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전산시스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조달청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연내에 착수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각각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16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소비자 소송지원 예산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각각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인데 공정위에서는 동의하십

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2건에 대해서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7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주의 의견의 시정요구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8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주의의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는데 공정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의견은 주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19쪽입니다.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 의견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선주** 20쪽입니다.

과징금 환급액 축소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환급절차 완료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시정요구사항과 두 번째 있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첫 번째에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후단에서 ‘폐소 시 담당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주의, 시정, 주의가

있는데 공정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1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어서요 그 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1-2에서 주의와 시정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그거는 시정 의견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1-1에서 후단에 있는 ‘폐소 시 담당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저희는 폐소 자체는 실무자의 책임보다는 합의제 기구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한테 인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1-1과 1-2를 1-1의 전단 부분만 1-2와 합쳐서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주의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柳榮夏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공정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과 1-2를 합해서, 1-1의 후단 부분을 삭제하고 합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이선주** 21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있는데 공정위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동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은 없는 거네요.

○**전문위원 이선주**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 했네요.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0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려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근 김상훈 김용만 김현정 유영하 이인영 이정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영수

총무기획관 노혜원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이후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경영지원본부장 연대흠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 김천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심성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기획처장 이진수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황준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박은아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 신희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성재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세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이윤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선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한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창욱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이승우

복지증진국장 최병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훈문화정책관 나치만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의료심의관 한상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하유성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민병원

88관광개발(주)

전무이사 박찬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심판관리관 김근성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이정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형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양종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유대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김서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이환석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주영
한국산업은행
재무관리부문장 주동빈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인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조은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기획조정관 고은영